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5. 5. 28.>

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(변경신고)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고인	상 호(명칭)	하역업 등록일
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신고내용	항만명:	신고의 종류 [] 신규신고 [] 변경신고
	화물명:	운임 및 요금

변경사유	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(시·도지사) 귀하

첨부서류	1.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. 사업의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 3. 운임 및 요금의 신·구 대조표(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
작 성 방 법

1.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(물량기준)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.
2.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“첨부서류로 갈음”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.
3.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수 리	→	통보
신고인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